

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2월 27일  
이은길 의원 등 13인
2. 회 부 일 자 : 2006년 3월 3일
3. 상 정 일 자 : 제209회 임시회  
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(2006. 3. 13)
4. 심 사 과 정 :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
  -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권영복 의원
2. 제안이유
  -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약 10%정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·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.

III. 주요골자

- 가.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군에 대하여 약 10%정도 강화하여 기준을 정함.(안 제2조 및 별표)
- 나. 조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토록 함.(안 부칙 제1항, 제2항)

IV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하역사, 지하 도시상가, 대합실, 실내주차장 등 16개 시설군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“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”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23일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 20일간 경기도보 등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기도 환경국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(내용별첨).

- 먼저 경기도의 의견을 살펴보면 조례(안)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, 법 제정 시행기간이 짧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,
- 조례에 정해진 유지기준에 의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부과는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민감한 사항으로 도시의 규모나 형태가 다른 서울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,
- 조례에 의한 유지기준 설정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제반 절차를 선행한 후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근거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임.
-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기준강화는 현실적인 저감능력과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, 오염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특히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실내공기질 강화에 따른 근거가 미약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저항이 예상되므로,
-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저감기술, 저감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군별, 항목별로 기준강화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,
- 기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“대덕 글로리 번영회”와 용인시 기흥읍 마북리 “이우노”씨 등으로부터 현재 상태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.
- 상기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, 관련부서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바,
-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,
- 현재로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 기간이 짧고, 아직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한 점과,
-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약 10% 정도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기준설정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미약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바,
- 조례 안에서 제시된 규제기준이 과연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규제기준 산출 근거 제시 등의 검증과정이 없을 경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V. 질의답변 요지 : 생 략

VI. 토론요지 : 없 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---

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PM10)	이산화탄소 (CO2)	포름알데히드 (HCHO)	총부유세균 (CFU)	일산화탄소 (CO)
지하역사 지하도상가	14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1,000ppm 이하	10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-	9ppm 이하
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	14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1,000ppm 이하	12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-	9ppm 이하
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 ·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·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	10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900ppm 이하	10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800m <sup>3</sup> 이하	9ppm 이하
실내주차장	18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1,000ppm 이하	120 $\mu$ g/m <sup>3</sup> 이하	-	20ppm 이하